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일시 | 2026. 6. 30.(화) 14:00 ~ 17:00

장소 | 한국세무사회 대강당 (본관 6층)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표지면지

표지와 동일하게 흑백으로 들어갑니다.

PROGRAM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시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 ▶ 장소 : 한국세무사회 대강당(본관 6층)
- ▶ 주제 : 시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 ▶ 주최 : 한국재무관리학회, 이광재 국회의원, 한국세무사회
- ▶ 주관 : 한국지역경영원
- ▶ 후원 : 한국세무사회
- ▶ 세부 일정표

사회: 신은정교수(백석대학교)

시 간		내 용	
▶ 1부	14:00~14:15	등록	
	14:15~14:30	개회식	
		개회사	정성훈 회장(한국재무관리학회)
		환영사	구재이 회장(한국세무사회)
		축사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념사진 촬영	
▶ 2부	14:30~15:30	주제1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 발표자: 최희경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
		주제2	AI 기반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량 발표자: 전홍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15:30~15:40	휴식	
▶ 3부	15:40~17:00	패널토론	좌 장: 정기만 교수(한국교통대학교) 토론자: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장보원 세무사(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정지영 교수(Hang Seng Univ. of HK) 토론의견 수렴 및 청중 질의응답

CONTENTS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인사말씀]	개회사 정성훈 회장(한국재무관리학회)	i
	환영사 구재이 회장(한국세무사회)	iii
	축사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v
	축사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vi
[주제]	1.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	1
	최희경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	
	2. AI 기반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량	21
	전홍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패널토론]	(좌장) 정기만 교수(한국교통대학교)	31
	(토론자)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33
	장보원 세무사(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35
	정지영 교수(Hang Seng Univ. of HK)	37



정성훈 회장(한국재무관리학회)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한국재무관리학회와 한국세무사회가 마련한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AI 디지털플랫폼 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과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세무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세무 신고와 검증, 위험 분석과 세무 자문, 납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은 세무 업무의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세무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원칙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세무 전문가의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술 혁신 속에서 조세 정의와 납세자 권익은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재원인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민에 대한 책임이라는 조세의 가치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AI 시대일수록 세무 전문가는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와 국가를 연결하는 신뢰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디지털자산과 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 AI 기반 세무 자동화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미래 세무사가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에 대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가 학문적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 세무제도의 발전과 세무 전문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축사를 맡아주신 이광재 국회의원님, 문대림 국회의원님, 환영사를 해주신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님, 그리고 발표와 토론을 준비해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AI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한민국 세무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사)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 정 성 훈



구재이 회장(한국세무사회)

존경하는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님,
오늘 축사를 맡아 주신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과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도 성실신고 지원과 납세자권의 보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전국 18,000 세무사공동체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입니다.

먼저, 이광재 국회의원님과 한국재무관리학회, 한국세무사회가 공동주최하는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를 이곳 한국세무사회 대강당에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AI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우리 세무의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공동으로 마련해 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직접 자리하시지는 못하였으나 뜻깊은 영상축전을 보내주신 이광재 국회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하시어 직접 축사를 맡아 주신 문대림 국회의원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재무·금융 분야 학문 연구를 든든히 이끌어 오신 한국재무관리학회의 학문적 성취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학계와 실무, 그리고 정책 영역을 폭넓게 아우르며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오신 학회의 헌신은 그 자체로 큰 귀감이 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 학회를 이끌어 가시는 정성훈 회장님의 깊은 학문적 열정과 노고에도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의 대주제인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는 그야말로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시의적절한 화두입니다. AI 기술은 이미 신고대리, 자동기장, 세무 리스크 분석 등 세무 실무 전반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경제와 가상자산의 확산은 기존 과세 제도의 근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한복판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 우리 세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한국세무사회 또한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원 세무사들의 AI·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확대, 학계 및 입법기관과의 정책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다루어질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과 「AI 기반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량」은 학문적 진단과 실무적 통찰을 종합적으로 짚어 주는 매우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귀한 옥고를 준비해 주신 법무법인 태평양 최희경 회계사님과 성신여자대학교 전홍민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 주신 한국교통대학교 정기만 교수님,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쳐 주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님, 장보원 세무사님, 홍콩항생대학교 정지영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세무사회는 AI 디지털 시대를 헤쳐 나가는 데 있어 학계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재무관리학회를 비롯한 학계의 연구와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세무제도 발전과 납세자권의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학문적 성과와 실무적 지혜가 어우러져 AI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세무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값진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구재이



이광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갑 국회의원 이광재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국가마다 변혁의 길을 앞다투고 있고, 경쟁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틀만으로는 해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때일 수록 속도보다 목표점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지나온 대한민국이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간화'입니다. 복지·문화·행복·존엄·환경·AI 윤리가 국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시대, 그 한가운데서 세무사 여러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세무사는 AI 시대에 남다른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와 재정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여러분이야말로, 디지털 자산과 플랫폼 경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과세 질서를 공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이번 「AI 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하계 특별심포지엄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 회장님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님, 그리고 주관을 맡아주신 한국지역경영원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정책과 예산으로 실현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회의원 이 광 재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문대림입니다.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 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세무·회계 분야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재무관리학회 정성훈 회장님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님 그리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발표와 토론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와 디지털 플랫폼의 급속한 발전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무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OCR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한 자동 분개, 머신러닝 기반의 이상거래 탐지, 실시간 세수 예측 모형의 등장은 이미 세무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국세청이 AI 챗봇을 도입하여 시범운영에 나선 것도 그 흐름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무사라는 직군의 위기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확신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납세자와 과세당국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개별 사정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설계하며, 최종 판단과 책임을 지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무사는 단순 신고 대리인을 넘어 '맞춤형 세무관리 파트너'로 진화해야 하며, 그것이 AI 시대에 세무 전문직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이 심포지엄이 우리 세무 행정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시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 AI 모델의 신뢰성 검증, 세무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은 이제 국가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국회에서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춘 정책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세무 산업의 건전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30일

국회의원 문대림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주제 1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



최희경 회계사(법무법인 태평양)

디지털자산·플랫폼 기업 과세의 이론적 쟁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 2026년 6월 | 공인회계사 최희경

목차

- 01**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발행·보유·사용·양도·상환 단계별 과세 포인트
- 02**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사용자 참여·네트워크 효과·데이터 가치의 원천지
- 03**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BEPS 2.0 두 기둥 · DST · UN 조세협약 · CARF
- 04**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기타·자본이득·금융투자·사업소득, 신종소득의 공백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1 디지털자산 관련 세무 쟁점 개관 - OECD의 디지털 경제 과세 원칙



응능부담 *Ability to Pay*

담세력 있는 경제적 이익에 과세

쟁점 토큰 평가손익 미실현이익 과세



원천지 과세 *Source*

가치가 발생한 국가가 과세

쟁점 사용자·데이터를 '원천'으로 볼 수 있는가



편익원칙 *Benefit*

공공 인프라·시장 접근의 대가

쟁점 플랫폼이 물리적 인프라를 거의 쓰지 않을 때



중립성 *Neutrality*

유사 경제활동은 유사하게 과세

쟁점 코인·주식·외환·상품 사이의 분류



집행가능성 *Administrability*

확인·평가·징수가 가능한가

쟁점 비수탁 지갑·DeFi·해외거래소 정보 비대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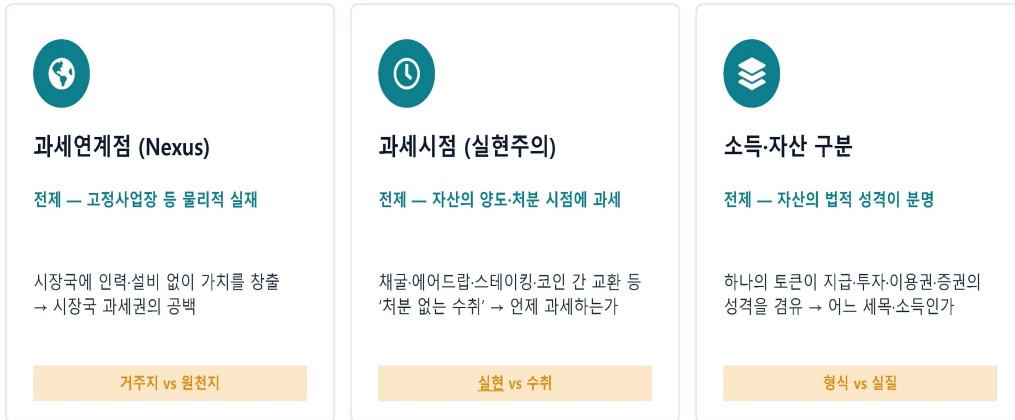


쟁점

디지털자산 과세는 '세율'보다
'분류·원천·정보'가 핵심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2 디지털자산 관련 세무 쟁점 개관 - OECD BEPS Action1 (2015)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3 디지털자산 생애주기에 따른 과세



과세체계는 '토큰의 법적 성격'보다 거래 단계별 **경제적 기능** 고려 필요
 동일 토큰도 투자자 보유·발행사 매출·플랫폼 수수료·사용자 리워드에서 서로 다른 소득으로 분류 가능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4 경제적 실질에 따른 범주, 서로 다른 과세

유형	대표 기능	주요 쟁점
결제형 토큰	지급·교환 매개	외환상품·기타자산 중 어느 성격인가, 결제 시 양도차익 실현인가
증권형 토큰	투자계약권리표상	배당이자양도소득 및 증권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유틸리티 토큰	서비스 접근권	선수수익매출 인식, 미사용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거버넌스 토큰	프로토콜 의사결정권	무상취득·에어드롭 평가, DAO 기여 보상의 성격
스테이블코인	가치안정상환청구	화폐·채권·전자지급수단·가상자산 경계, 준비자산 수익 귀속
NFT	고유대체불가 자산	미술품·저작권·응역채고자산 경계

규제상 분류와 회계처리를 함께 검토할 필요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5 스테이블코인 과세 - '지급수단'의 실질과 '가상자산'의 형식 사이

분류 불일치 (Classification Mismatch)

경제적 실질

법정통화에 1:1 연동된 지급·결제 수단



현행법상 형식

가상자산으로 분류 → 자산 과세규칙 적용

1

발행·상환

1:1 발행·상환이 과세대상 '양도'인가, 단순 교환 매개인가

2

결제 사용

재화·용역 구매 시마다 보유차익을 실현·과세할 것인가 — 소액·다빈도 결제의 집행 가능성

3

부가가치세

지급수단이면 금융 면세, 자산이면 과세 — 거래의 중립성

4

발행자 수익

준비자산(국채·예금) 운용수익의 소득성격·귀속, 이자 분배형 코인

I. 토큰·스테이블코인 과세 체계

6 스테이블코인 입법 현황

국가	규제·과세 골격
미국	GENIUS법(2025) — 100% 준비자산·인가, '지급스테이블코인'을 연방 차원에서 제도화
EU	MiCA — 전자화폐토큰·자산준거토큰 구분, 인가 발행자의 다수가 비(非)은행
일본	자금결제법 개정 — 은행·신탁·자금이동업자에 발행 허용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교착 — 발행주체 논쟁(한은 '은행 51%' vs 금융위 '핀테크 참여')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표준으로 고착 가능성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1 플랫폼기업의 가치창출 구조 - 물리적 실재 없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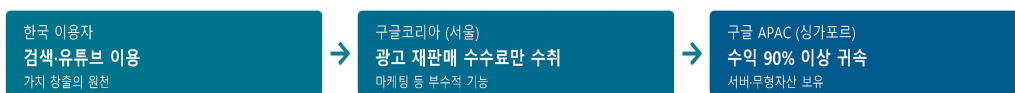


가치는 시장(이용자) 소재지에서 창출, 전통적 과세연계점(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 가치창출과 과세권이 분리된다.

출처 OECD BEPS Action 1 최종보고서(2015)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1 플랫폼기업의 가치창출 구조 - 물리적 실재 없이 가치가 만들어지는 곳 (사례)



핵심 쟁점 한국에서 가치가 창출되고 수익이 발생했지만, 핵심 기능·자산이 싱가포르에 있다면 한국에 고정사업장(PE)이 존재하는가?

과세당국 주장

광고 수수료는 **사용료 소득** → 한국 과세 / 2020년 1,540억원 부과

구글코리아 주장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 → 한국 PE 없음 / 국내는 부수적 활동

1심 (2025.1) **구글 승소**

2심 (2026.5) **구글 승소**

현황 **상고심 예정**

법인세 비교(2024) 구글코리아 172억원 vs 네이버 3,902억원 —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약 6배
 학계 추산 적정세액 약 6,762억원 (실납부액의 약 40배 / 가천대 전성민 교수, 2024)

출처 서울행정법원(2025.1)-서울고법(2026.5) 판결 및 관련 보도 · 전성민 교수(2024) 추산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2 과세연계점(Nexus)의 균열 (가치창출지 ≠ 과세권 귀속지)

전통적 과세연계점



고정사업장(PE) = 물리적 실재
 서버·인력·설비가 있는 곳에 과세권을 인정. 시장국 과세권의 정당화 근거가 '물리적 존재'에 묶여 있다.

→ 디지털 기업은 시장국에 PE 없이 원격으로 침투 → 과세권 공백

새로운 연계 개념

의미 있는 디지털 실재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이용자·매출 등 디지털 발자국을 새로운 과세연계점으로 삼으려는 시도

쟁점
 과세권 배분의 근거는 '공급(생산)'인가 '수요(시장)'인가?
 원천지 개념을 시장 기반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가?



출처 OECD BEPS Action 1 최종보고서(2015)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3 데이터의 자산성과 이전가격 - 독립기업원칙은 무형의 가치를 가격화 할 수 있는가

DEMPE 기능 분석

무형자산 소득은 개발(D)·향상(E)·유지(M)·보호(P)·활용(E) 기능의 수행 주체에 귀속된다.

디지털 환경의 난점

- ① 데이터는 취득원가가 없고 무상 수집된다
- ② 비교가능 거래가 부재 → 정상가격 산정 곤란
- ③ 가치 기여 주체(이용자)와 소득 귀속 주체(법인)의 불일치



이용자 참여 (User Participation)

시장국 이용자의 능동적 기여가 무형자산 가치를 구성한다
 영국 등이 제기. 시장국 과세권 확대의 논거



마케팅 무형자산 (Marketing Intangibles)

브랜드·고객관계 등 시장에서 형성된 무형가치를 시장국에 귀속
 Amount A 잔여이익 배분의 이론적 토대

출처 OECD 이전가격지침(DEMPE) · 영국 User Participation 제안(2018)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4 플랫폼 과세모델 — 법인세·간접세·거래세가 중첩

모델	과세 근거	장점	한계
고정사업장 / 법인세	물리적·인적 실체	조약체계와 정합성	원격·자동화 모델 포착 곤란
디지털서비스세(DST)	사용자·매출 소재지	집행이 비교적 단순	중복과세·통상분쟁 가능성
부가가치세 / 원천징수	소비자·지급흐름	징수 인프라 활용	B2B/B2C 구분·플랫폼 책임
Pillar One Amount A	시장국 매출·초과이익	다자적 배분 원리	정치적 합의·시행 불확실
정보보고 (CARF/CRS)	거래자료 투명성	집행가능성 제고	비수탁·DeFi·식별 문제

단일모델로는 완벽한 디지털 과세가 불가
 직접세·간접세·정보보고가 '중첩' → 이중과세 방지가 핵심 과제

출처 OECD BEPS Action 1(2015) · 유현영·홍민욱, KIPF(2018)

15 |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II. 무형자산·데이터 가치와 과세권

5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세 이슈

1

가치창출 vs 과세권

이용자가 만든 '가치'를 과세권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소비자(수요)와 생산자(공급) 중 어디에 우선권을 둘 것인가?

분배 정의 문제

2

독립기업원칙(ALP)의 한계

데이터·무형자산은 비교가능 거래와 취득 원가가 없어 정상가격 산정이 어려움

ALP라는 100년 된 원칙의 적용 가능성 자체가 도전

3

원천지의 재정의

물리적 실재 없는 시장 기반 과세연계점 (market nexus)을 어떻게 정당화하고 국제적으로 합의

조세조약 체계의 근간과 관련

16 |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1 디지털 환경에서의 부가가치세,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자 과세' 원칙이 명확 → 외국사업자 등록제로 B2C 거래를 과세
OECD 2015 권고 · 한국 2014년 부가가치세법 §53-2 도입 (2025하반기부터 과세)

법인·소득세 — 20년 + 미해결

'고정사업장(물리적 실재)' 기준 → 디지털 기업을 포착하지 못함
OECD 1998년 논의 착수 → 2015-2018 보고서도 결론 유보

23.2%

VS

9.5%

일반 기업 평균 유효세율

디지털 기업 평균 유효세율

EU(2018) 이 격차가 '공정과세(fair tax)' 논거의 출발점
디지털세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 가능성'의 문제

가치는 시장(이용자) 소재지에서 창출, 전통적 과세연계점(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음 → 가치창출과 과세권이 분리

출처 유현영·홍민욱, KIPF 조세재정 BRIEF(2018) · European Commission(2018)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2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이익배분 규칙(Pillar One)은 합의가 지연되는 반면, 보고·교환 규칙(CARF)은 빠르게 제도화

출처 OECD · UN Framework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ax Cooperation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3 2021년 합의 전 - 각국의 일방적 과세 조치 사례

OECD 2018 중간보고서 — 네 가지 유형

유형	도입 사례
① 고정사업장 기준 수정(디지털 사업장 인정)	이스라엘·인도·사우디 등
② 원천징수 강화(수동소득 간주)	그리스·영국·태국
③ 매출액 기준 과세(turnover)	인도(외국만), 이탈리아(자국 포함)
④ 우회이익세(DPT)* (PE회피 기업 과세)	영국·호주

* 우회이익세는 디지털 전용 제도가 아님

EU 2018 — 두 개의 제안

디지털 사업장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물리적 PE 없이도 가상 고정사업장 인정. 요건(택1+): 매출 €700만 / 이용자 10만 / 계약 3천건 초과

디지털서비스세(DST) 3%
 사용자 데이터, P2P 플랫폼 매출에 부과. 대상: 전세계 €7.5억 & EU €5천만 초과 (세수 €50억 추정)

인도가 2016년 균등세(Equalization levy)를 도입(일방적 조치의 첫 사례)

※ 매출 기준 과세·균등세는 WTO 무차별(non-discrimination)이중과세와 충돌 소지

출처 OECD, Interim Report(2018) · 유현영·홍민욱, KIPF(2018)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5 2021, 140여 개국 합의(BEPS 2.0) – Pillar One : Amount A

€200억

연결매출 기준 (대상 MNE)

10% 초과

이익률 요건

25%

초과이익 중 시장국 배분 비율



현황 (2026) 다자조약(MLC)은 2023.10 공개되었으나, 서명조차 개시되지 못한 사실상의 교착 상태.

전제 조건 Amount A의 발효는 각국의 일반적 디지털서비스세(DST) 폐지-동결이 조건임

출처 OECD, Amount A 다자협약(MLC, 2023)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6 2021, 140여 개국 합의(BEPS 2.0) – Pillar Two : 글로벌 최저한세

GloBE(Global Anti-Base Erosion)
글로벌 세원잠식 방지 작동 구조

적용 대상
연결매출 €7.5억 이상 다국적기업

과세 방식
관할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top-up)을 부과

한국
글로벌최저한세 2024년 시행 중



미국 Side-by-Side (2026.1.5 OECD 합의)

미국 모회사 그룹을 IIR(소득산입규칙)·UTPR(미달과세지급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미국 자체 최저한세 체계를 인정

- 현재 '적격' 관할은 미국이 유일
- 미국 \$899(보복세) 철회와 연계
- QDMTT(국내최저한세)는 그대로 유지

쟁점 최대 시장본국인 미국의 사실상 예외는 '공평한 경기장(level playing field)'이라는 Pillar Two의 이론적 정당성 시험 중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7 일방적 디지털서비스세(DST) vs BEPS 2.0 Pillar One



DST(Digital Services Tax)란

프랑스·영국·인도 등이 디지털 매출액에 직접 부과(EU 제안 3%)하는 일방적 과세 → 다자 합의 지연의 산물



갈등 구조

다자협약(Art 37:38) — DST를 유지하면 그 시장국은 Amount A 배분받지 못함
미국 등 본사국이 협약을 미체결하면 IF(포괄적 이행체계)는 DST 도입 촉구 가능

쟁점

룰 기반 다자간(합의)와 과세주권에 근거한 일방조치 사이의 갈등
→ 국제조세 거버넌스의 근본 문제로 환원



한국에의 의미

시장국이자 본국이라는 이중적 지위
→ 시장국 과세권 확보와 자국 기업 보호의 균형 (Pillar Two는 이미 내재화)

III. 글로벌 디지털세 흐름

8 OECD vs UN — 국제조세 거버넌스의 두 트랙



OECD 트랙 — BEPS 2.0

주도 선진국 중심 · 포괄적 이행체계(IF)

핵심 Pillar One(Amount A 재배분) · Pillar Two(15% 최저한세)

방식 정교한 공식(formula) 기반 배분

상태 Pillar One 교착 / Pillar Two 시행 확산



UN 트랙 — Framework Convention

주도 개도국 주도 · 전 회원국 동등 참여

핵심 기본협약 + 의정서 ①국경 간 서비스 과세 ②분쟁 예방·해결

방식 단순·원천지 기반(매출·총액 과세 선호)

일정 2025~2027 협상(연 3회) · 의장 이집트

규범 권력이 OECD 단독 → OECD vs UN 이원 구도로 분화

한국은 OECD 회원이자 시장국·본국이라는 다중 지위로, 두 트랙 모두에서 과세권 입장 정립 필요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1 가상자산 소득세 개관(대상: 개인, 외국인, 외국법인)

현행 소득세법 (시행 예정 골격)

시행 시기 2027. 1. 1.
과세대상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소득 구분 기타소득·분리과세
세율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취득가액 의제취득가액(26.12.31 시가 vs 실제취득가 중 큰 금액)

세 차례 유예된 시행 시기

2022

2023

2025

2027

제4차 유예 가능성도 거론되나, 과세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상 추가 유예에 부정적.

쟁점 가상자산 차익은 본질상 **자본이득**에 가까운데 '기타소득'으로 과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형평·정합성 논란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2 가상자산 소득 유형의 다양성 - 신종 소득 미정의

스테이킹 보상 검증 참여 대가인가 · 대여 수익인가	에어드롭 무상취득인가 · 마케팅 대가인가	하드포크 신규자산 취득시점 · 취득가액 산정
DeFi 유동성공급 이자수수료·파생손익 혼합 구조	NFT / 데이터 토큰 무형자산·저작권·용역 경계 문제	DAO 보상 근로·사업·기타소득 · 지급자는 누구인가

소득발생 기준: 통제 가능성 · 경제적 처분가능성 · 공정가치 측정가능성 · 지급자원천 식별가능성
 → 현행법은 '양도대여'만 규정해 수취형 소득의 정의·시기·평가가 공백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3 가상자산 소득 구분 - 기타소득 (중립성 vs 집행 편의)

구분 옵션	장점	한계
기타소득	현행 설계에 가깝고 분리과세 용이	금융상품 유사거래와 중립성 문제
양도소득 / 자본이득	자산 처분손익의 경제실질 반영	자산 범위·공제·결손 체계 재설계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상품중립성 논리 강화	가상자산의 금융상품성 인정 문제
사업소득	전업 트레이더·마켓메이커 실질 반영	개인투자자와 구분 기준 불명확
이자·배당 유사	스테이킹·렌딩 보상 분류에 적합	프로토콜 보상과 채권·지분의 법률관계 불일치

판단 기준

- ① 자산의 법적 성격
- ② 거래 빈도·영업성
- ③ 수익 발생 메커니즘
- ④ 손실 인식 방식
- ⑤ 자료제출 가능성


소득구분은 기술적 분류가 아니라 중립성 vs 집행 편의를 둘러싼 조세정책의 가치판단 필요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4 가상자산 소득-과세체계(자료, 신원, 평가)와 CARF

집행의 다섯 축

-  **신원** 실명확인-거주자성-실소유자
-  **거래** 매수-매도-스왑-입출고-대여
-  **평가** 시가-취득가액-수수료-환율
-  **연결** 국내↔해외 거래소↔개인지갑
-  **징수** 신고-원천징수-자료제출-검증

 **CARF —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

- 1 이용자 — Tax residence 식별
- 2 보고 VASP — 거래 잔액 대가 수집
- 3 관할 당국 — 자료 수령 검증
- 4 국가 간 자동교환 (AEOI)

 수탁 거래소 중심 설계
비수탁 지갑-DeFi-DEX-프라이버시 코인에는 집행 공백
미국은 2029년 CARF 참여 예정으로 정보 시차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4 가상자산 소득-과세체계(자료, 신원, 평가)와 CARF (계속)

(참고) 해외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련된 관할권에서 정보자동교환이 개시되는 시점

구분	국가명
2027년까지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한 관할권 (48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불가리아, 케이맨 제도, 칠레,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페로 제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건지,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맨섬,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저지,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간다, 영국
2028년까지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한 관할권 (27개국)	호주, 아제르바이잔, 바하마, 바레인,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캐나다, 코스타리카, 키프로스, 홍콩(중국), 케냐,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나이지리아, 파나마, 필리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이셸 , 싱가포르, 스위스, 태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2029년까지 최초 정보교환을 개시하기로 한 관할권 (1개국)	미국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5 가상자산 소득—소득 개념 쟁점

1

실현주의 vs 수취주의

처분 없이 수취되는 보상(채굴·스테이킹·에어드랍)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원칙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실현 개념의 경계.

2

소득구분의 정합성

기타소득·자본이득·금융투자·사업소득 중 무엇으로 볼 것인가. 자산의 경제적 성격과 과세체계(세율·공제·손익통산)를 정렬해야 한다.

3

형평성·집행가능성

타 투자자산(주식 등)과의 과세 형평, 국경을 넘는 익명 거래에 대한 실효적 집행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가.

IV. 가상자산 소득 구분 문제

6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려 사항



중립성

경제적으로 유사한 거래는 유사하게 과세



확실성

과세요건·평가시점·필요경비의 예측가능성



집행가능성

자료제출·자동교환·원천징수 인프라와 결합



실무 제언

1 거래유형별 예규·가이드라인 선제 제공

2 취득가액·입출고 자료 표준화

3 해외거래·비수탁 지급 신고체계 정비

4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준비자산 과세기준 명확화

bkl

—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한)태평양

2026년 6월

공인회계사전문위원 최희경 (heekyung.choi@bkl.co.kr, 010-9236-3960)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주제 2



AI 기반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량



전홍민 교수(성신여자대학교)

AI 기반 세무 자동화와 세무사의 미래 역량

발표: 전홍민 (성신여대)

2026년 6월 30일 한국재무관리학회-한국세무사회 공동특별심포지엄

MWC 2026 5대 트렌드

1. 지능형 인프라

- AI 활용 영역 확대와 스마트홈, 피지컬 AI 등 지속적으로 사용량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능형 인프라의 중요성이 강조됨
- 글로벌 기업의 AI 기반 통신 인프라 혁신과 위성 통신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미래 통신 수요 대응 전략이 조망됨

2. 피지컬 AI

- 시각 스포츠, 로봇 등 다양한 대안산업에 탑재되며 물리적 공간에서 사용자의 직접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발전
- 이를 통해 일상 속 편의를 제공하는 피지컬 AI 영역이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짐

3. China

- 중국 기업의 참가 규모가 전년 대비 확대되며 전체 참가 기업 중 비중 증가
- 로봇, 프러미엄 호텔, 하이퍼카 등 하드웨어 혁신을 기반으로 자기 중심 이미지를 넘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질적 성장 흐름 부각

4. Techco

- Telco(통신 기업)에서 Techco(혁신 기술 중심 통신 기업)로 트렌스포메이션하는 글로벌 통신 기업들의 방향성 및 실행 사례 두각
- 시를 토대로 업무를 혁신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AXI(전환을 이휘기는 통신 기업의 AI 비즈니스 모델 및 AI 수익화 전략) 강조되어 나타남

5. 6G

- 글로벌 6G 시장의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글로벌 통신 기업의 움직임이 주목됨
- 6G 분야의 표준을 설계하기 위한 기술 발표와 함께 6G 아드밴스드 기술 개발을 통한 신재직 기술 상위 확보 경쟁이 펼쳐짐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로봇 + AI
Techco + Physical AI

What effect to Tax
Accounting Industry?

CES 2026 키워드

- H Health-tech**: 사용자 데이터와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질병 이전 맞춤 모니터링과 예방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다양한 예측형 헬스케어 기술 부각
- O Open ecosystem**: 기업 간 협업을 근간으로 한 개방형 생태계 강화가 두드러지며, AI 등 혁신 기술을 둘러싼 기업들의 다양한 협력 모델이 가시적으로 CES 현장에서 공개됨
- R Robot**: 시와 로보틱스의 결합을 통해 산업과 인간의 삶 전반에 적용 범위가 확장된 피지컬 AI가 부상하고, 차세대 로봇의 대표적 형태로서 휴머노이드의 존재감 강화
- S Self-driving**: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가 지속되며 관련 솔루션 개발 확대. 로보택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넘나드는 글로벌 기업의 움직임 두각
- E Energy**: AI 확산 등에 따른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로 에너지가 이슈로 떠오르며, 전력 인프라 확보, 지능형 기술과 AI 기반 전력망 운영 전략이 경영 주요 화두로 부상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현재
상용화된
회계 및
세무분야 4대
핵심 AI기술
정리

머신러닝

1

- 핵심 기능: 패턴 인식을 통한 이상거래 탐지 및 위험 예측감사
- 적용: 분개장 테스트, 부정 탐지, 위험 평가 모델적용
- 예시: 승인 한도 10,000달러 직하인 9,999달러 거래가 한 달에 100건 발생 시 자동 탐지
- 주요 한계: 블랙박스

대규모 언어모델

2

- 핵심 기능: 자연어 이해 및 생성을 통한 복잡한 텍스트 분석감사
- 적용: 계약서 검토, 회계기준 해석, 감사 조서 자동 생성적용
- 예시: 200페이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연장 옵션", "매입 선택권" 조건 자동 식별
- 주요 한계: 할루시네이션, 편향, 맥락 이해 한계

RPA (자동화)

3

- 핵심 기능: 규칙 기반 반복 업무의 완전 자동화감사
- 적용: 데이터 추출/변환, 계정 조정, 확인서 관리적용
- 예시: 매월 은행 잔액증명서 1,000건 자동 요청 → 수신 → ERP 시스템 대조
- 발전 방향: AI 통합으로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IPA) 진화

OCR & 컴퓨터 비전

4

- 핵심 기능: 문서 기반 증거의 디지털화 및 자동 분석감사
- 적용: 송장 처리, 서명 검증, 문서 진위성 확인적용
- 예시: 스캔된 구매 송장에서 공급업체명, 금액, 승인 서명 자동 추출 및 검증
- 발전 방향: NLP 결합한 지능형 문서 처리(IDP) 시스템

정태진, 나현중(2025)

국세청도 AI 챗봇을 도입하여 시범운영단계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4. 23.(목) 12:00 배포 2026. 4. 23.(목) 10:00 (브리핑 10:30)

국세행정 AI 대전환의 시작, 세무전문 AI 챗봇 시범운영

- 국세청의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답변하는 세무 특화형 국세청 AI 챗봇
- 5월부터 종합소득세·장려금 분야 AI 챗봇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 가능

【관련 국정과제】 24번,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사례 1] 개정세법 등 신속·정확 반영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차율 : '25년 귀속 3.1%로 조정 ('24년 : 3.5%)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② 범용 AI [개정사항 미반영] (4.17. 현재)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사례 2] 개정세법 등 신속·정확 반영

•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 세액공제 금액 상향 : (1인당) 300원 → 500원

① 국세청 AI 챗봇 [개정사항 반영]	② 범용 AI [개정사항 미반영] (4.17. 현재)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범용 AI 챗봇] : 2026년 4월 17일 10:00 배포</p> <p style="font-size: 8px;">[국세청 AI 챗봇] : 2026년 4월 23일 12:00 배포</p>

범용 AI와 국세청 AI 챗봇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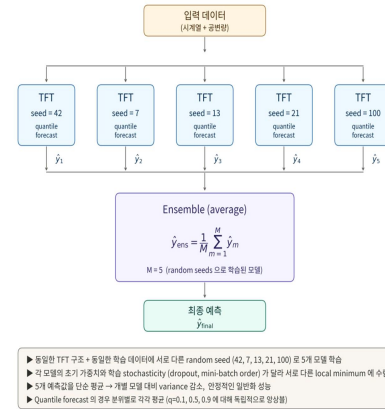
구분	범용 AI	국세청 AI 챗봇
활용 범위	• 폭넓은 일반 정보 제공에 강점	• 세법·신고·상담업무에 특화된 세무전문 답변 제공
답변 신뢰성	• 전문 분야에서는 일부 부정확한 답변 가능성 존재	• 국세청이 검증된 자료를 근거로 보다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 제공
적시성 반영	• 최신 개정세법·행정해석 등 즉시 반영에 어려움 측면 있음	• 최신 개정세법, 신고 유의사항, 상담사례 등을 신속·주기적 반영

Fast and Surprise Change

연구배경: AI+세무 최근 선행연구

모델	방식	차원	비고
Linear / Ridge / Lasso (Classical 회귀)	wide pivot (41 × 4 fields)	164 sem 컬럼	기본값 4 + 세목 × 년치 × 12개월
Tree / RF / GB (Classical 트리)	wide pivot (41 × 4 fields)	164 sem 컬럼	기본값 4 + 세목 × 년치 × 12개월
GRU / LSTM (RNN 계열)	RNN_EXTRA_SEMOK_NAMES	32-dim sequence step (4 base + 7×4)	도세계 비중 약 29% 커버
TFT (Temporal Fusion Transformer)	Variable Selection Network (자동 선택)	동적 (VSN이 결정)	입력변수 + 41 세목
Ensemble (GB+TFT)	단순 평균 50/50	—	예측만 결합, 학습은 독립

TFT Multi-Seed Ensemble 구조 (5개 시드 평균, 학습 시간 5배)



-머신러닝을 위한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빅데이터 확보
-LLM(Chat GPT and Gemini)을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된 정보생성의 활성화

-전홍민, 김준영(2026)도 머신러닝(10종 모델)을 활용한 세수추계를 실제 지방자치단체 세수추계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있음 (TFT모델과 앙상블 머신러닝 모델에서 더욱 유의한 값이 나오음-> AI기술의 발전이 향후 예측력을 더욱 높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실시간 AI 세무 인프라 구축

-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ETL, Extract, Transform, Load):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하여 은행, 카드사, 국세청 등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체계
- AI기반 자동 분개: 비정형 데이터(Ex: 영수증, 계약서 등)를 OCR로 읽고 AI가 스스로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기술
 - OCR, 자연어 처리(NLP), 머신러닝
 - 영수증 OCR 및 자동 분류: 직원이 식당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OCR(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 날짜, 금액, 가맹점명을 인식. AI는 '스타벅스'라는 텍스트와 '오후 3시'라는 시간을 분석해 이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자동 제안
 - 계약서 기반 수익 인식: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계약서를 AI가 스캔. AI는 계약 기간, 의무 이행 시점, 총 계약금액 등 주요 조항을 추출하여, 매월 얼마의 매출을 인식해야 하는지(분개 처리) 스스로 계산 모델을 생성.
 - 과거 패턴 학습 분개: 특정 거래처(Ex: 한국전력)에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지출을 학습. AI는 전력 요금 고지서가 들어오면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변에 '수도광열비',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자동 분개 전표를 생성

실시간 AI 세무 인프라 구축

- 이상거래 탐지(FDS): 실시간 데이터 흐름속에서 부정거래나 중복결제에 있으면 이를 즉시 포착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강화

•AI를 활용한 은행의 시스템 EX: 70대 어르신이 평소에 하지 않던 **거액의 계좌이체**를 스마트폰으로 시도하며, 동시에 **출처 불명의 원격 제어 앱**이 실행 중인 것을 탐지함. **탐지 결과:**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주요 은행의 FDS는 이를 보이스피싱 정황으로 판단하여 해당 계좌를 일시 정지시키고 경찰이나 가족에게 알림

- 중복결제 및 허위 전표 차단: AI가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다가, 동일한 금액과 날짜의 중복 전표가 발견되면 승인 단계에서 즉시 경고를 함
- 비정상 패턴 감지: 평소 거래가 없던 유명 회사 계좌로 거액이 송금되거나, 휴일 심야 시간에 법인카드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등의 부정의심거래가 포착되면 이를 바로 알림

•**이상치 탐지 (Anomaly Detection):** 특정 기업의 평소 지출 패턴(금액대, 거래처, 시간대 등)을 학습한 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

머신러닝기법을 활용한 이상거래 탐지(FDS)

• ①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 "과거 사례 학습"

이미 발생했던 부정 거래 데이터를 정답지(Label)로 삼아 학습하는 방식.

실제 사례: 카드사에서 '카드 복제' 사고 패턴을 학습한 뒤, 비슷한 유형의 결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99% 확률로 도난 카드 사용이다"라고 판단하여 승인을 거절.

주요 알고리즘: 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등.

• ② 비지도 학습 (Unsupervised Learning): "낯선 패턴 발견"

정답지가 없어도 데이터들 사이에서 '튀는 값(Outlier)'을 찾아내는 방식. 변칙적인 회계 부정이나 신종 사기를 잡는 데 유리.

실제 사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해당 업종이나 부서의 평균적인 지출 패턴에서 크게 벗어난 **변칙적 지출**을 탐지. (예: 평소 사무용품만 사던 부서에서 갑자기 고가의 가전제품을 여러 번 결제)

주요 알고리즘: Isolation Forest, Local Outlier Factor (LOF) 등.

• ③ 딥러닝 (Deep Learning): "비정형 데이터 분석"

이미지, 텍스트, 사용자 행동 패턴(Behavior) 등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

실제 사례 (안면 인식 부정 결제 방지): 결제 시 카메라에 찍힌 얼굴이 사진이나 영상인지, 실제 사람인지 판별하여 **생체 인증 부정**을 방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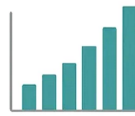
지속적으로 머신러닝 기법은 발전을 하고 있고, 특히 input data의 퀄리티 증진 및 알고리즘 기법 자체의 발전으로 향후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Ex: Codesso, Hoitash and Hoitash (2026), JIS, 코로나19와 인적자본에 대한 워드리스트 개발 등]

AI 기반 예측모형(Predictive Modeling) 설계

- 머신러닝 기반의 다양한 예측 모형 모델링
- 회계 데이터를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의 신호'로 변환하는 핵심 단계
- 현금흐름 예측: 매출채권 회수 패턴과 매입 채무 지급 기일 등을 분석하여 향후 3~6개월간의 자금 유동성 시뮬레이션
- 지능형 예산관리: 과거 집행 패턴과 시장 변수를 결합하여 부서별 예산 소요를 예측하고 최적화된 자산 배분 모델 구축
- 수익성 분석 및 Forecast: 고객별, 제품별 공헌이익을 실시간 산출하여 분기 말 결산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롤링 포어캐스트(Rolling Forecast)
- 이익을 기반으로 세액계산
- 예측을 넘어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추천하는 단계(Prescriptive Analytics)

Descriptive Analytics

The "What Happened?"



Predictive Analytics

The "What Could Happen?"



Prescriptive Analytics

The "What Should We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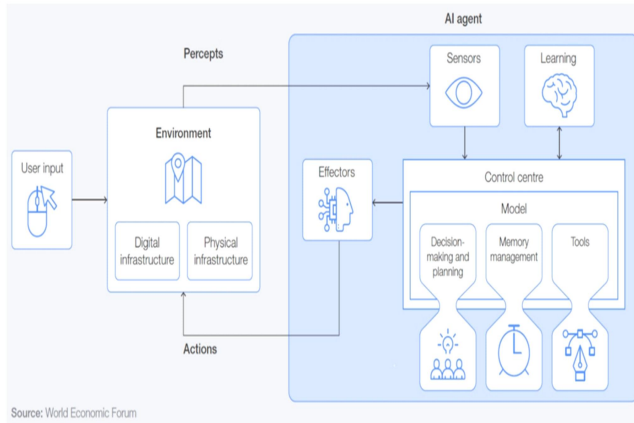


세무 인력의 역할 변화와 데이터 거버넌스

- 기술 도입만큼 중요한 것은 이를 운용하는 사람의 변화
- **세무사에서 개인(법인)별 맞춤형 세무관리 전문가로:** 세무사가 단순히 세금계산(조정)을 하는 입력 중심에서 AI가 만든 예측치를 해석하고 전략을 제안하는 기존보다 포괄적인 **세무관리 파트너**로의 역할 전환
- 고부가가치 컨설팅: 단순 신고 대리를 넘어 고객별 그리고 맞춤형 절세전략 수립, 경영자문, 기업승계, 자산관리 등 복합적인 법률, 금융, 세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량
-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대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최종 의사결정 및 권고자(Human Touch)로서의 능력이 매우 중요**
- AI를 활용(AI Literacy)하여, 해당 시스템이 도출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증 및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
-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부분은 추후 다양한 케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듯(대규모 데이터 확보 및 해당 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할 지에 대한 부분이 향후 쟁점, 머신러닝 기반 발전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표본만 확보하면 모델 구축 가능: Ex: 앙상블 및 TFT 모델)
-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하고 AI 모델의 편향성을 관리하는 데이터 관리자로서의 역량 강화



데이터 주도형 경영체계(Data-Driven Management)



Source: World Economic Forum

Key Components of Advanced AI Agents(출처: 세계경제포럼)

Agent AI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외부 도구(이메일, 앱 등)를 직접 실행하는 능동적인 인공지능

- 회계 및 세무 데이터가 경영진의 의사결정 대시보드에 직결되는 체계 Agent AI기반으로 각 사용자에게 맞춤으로 보다 Tailored된 부분이 가능(옆 그림참조)
- Self-Service BI:** 경영진이 조세팀에 보고서를 요청하지 않고도 직접 실시간 재무 지표를 조회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환경
- 시나리오 분석(What-if Analysis):** 환율, 금리, 원가 변동 시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AI 모델로 즉시 시뮬레이션하여 전략 수정 (데이터 구축 정도에 따라 정확도가 판가름 될 가능성이 높음)
-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으로 향후 데이터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측됨, 더불어 앞서 국세청의 챗봇처럼 관련된 데이터의 축적이 더욱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세무관련 Agent AI의 개발은 가속화될 예정

AI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과 세무사의 공공성

- 책임 소재의 문제**
 - AI가 세액을 잘못 계산하거나 공제를 누락하여 세무조사 추징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 결국 납세자 부담으로 귀결
 - AI 시대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라 책임성(Accountability)
- 세무사의 공공성 (세무사법 제2조)**
 - 세무사는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정의 실현, 성실신고 지원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사
 - 단순한 신고대리인이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행정과 납세자를 연결하는 조세전문가

AI = 계산
▼
세무사 = 검증 · 책임
전문가로서의 책임은 위임될 수 없다

AI 환각(Hallucination) 문제와 검증의 필요성

- AI는 생산성은 높지만, 최근 **사실과 다른 답변(환각)**이 빈번하게 발생
- 세법 적용의 **정확성 검증과 책임**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필수 역할

AI 환각의 실제 사례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규 인용
- 이미 폐지된 법령 인용
- 판례의 오(誤)인용

세무사의 검증 역할

- 인용된 예규·법령의 유효성 확인
- 세법 적용의 정확성 검증
- 최종 결과에 대한 전문가 책임 부담

핵심 메시지

AI의 생산성 + 세무사의 검증

정확성 검증과 책임이 결합될 때 비로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서비스가 완성된다

결론 및 향후 방향

-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I기반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검증)
 - 개인정보보안 등의 통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 대규모 LLM의 등장으로 코딩의 어려움은 대폭완화가 되었고, 결국 콘텐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Work-flow(Prescript)에 대한 적용이 더욱 중요할 수 있음
- 실시간 AI 세무 인프라 구축 -> AI 기반 예측모형(Predictive Modeling) 설계 -> 데이터 주도형 경영체계 (Agent AI기반)-> 환류
- 세무사에서 개인(법인)별 맞춤 세무관리 전문가로
 - 기업 AX 전방위 지원자문으로 변모
 -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에 대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Human Touch에 대한 부분**
 - 국세청에서의 AI챗봇도입으로 인해서 AI활용 및 데이터활용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예정
- Human에 특화된 업무에 우월한 세무사가 시장을 dominant

감사합니다.

질문은 hmchun@sungshin.ac.kr 로 부탁드립니다.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패널 토론



좌 장: **정기만** 교수(한국교통대학교)

토론자: **김효봉**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장보원 세무사(장보원세무회계사무소)

정지영 교수(Hang Seng Univ. of HK)

2026년 하계 특별심포지엄 AI디지털플랫폼시대, 세무의 역할과 미래

정지영 교수(Hang Seng Univ. of HK)

1. 예언과 현실 사이

2013년 옥스퍼드대학의 프레이와 오즈번(Frey and Osborne, 2017)은 미국 702개 직업 가운데 세무 신고 대리의 자동화 확률을 0.99로, 회계사·감사인은 0.94로 추산했다. 그러나 예언 이후 현재, 실제 데이터는 그와 사뭇 다른 그림을 보여준다.

2025년 1월 기준 등록 한국의 세무사는 1만 6,720명으로 5년 전 대비 24% 증가했다. 반면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기 사무원(bookkeeping clerk)은 감소세를 보인다. 기술 대체는 일어났지만, 대체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루틴이었고, 그 빈자리를 판단과 전략이 채우면서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커졌다. 1980년대 스프레드시트의 등장도 경리 사무원을 줄이고 분석 인력을 늘렸던 것과 같은 패턴이다.

2. 과세당국의 AI: 이미 달라진 환경

세무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상당히 달라졌다. OECD(2024)가 54개 주요국 과세당국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세무행정에서 AI를 도입했으며, 80%가 디지털 전환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세금 탈루·사기 탐지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이다.

영국 왕립세무청(HMRC)의 AI 빅데이터 시스템 'Connect'는 은행 기록, 온라인 거래, 부동산 정보 등 220억 줄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 연간 50만 명의 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2024/25 회계연도에 Connect가 이끌어낸 추가 세수는 £4.6 billion에 달했다(Pinsent Masons, 2025). 미국 IRS는 현재 129개의 AI 활용 사례를 운용 중이며 (2024년 54개에서 급증), 2025년 말에는 사례 요약과 문서 검색을 자동화하는 에이전트 AI 시스템 'Agentforce'를 도입했다. 호주 국세청(ATO) 역시 AI 기반 VAT 불일치 탐지를 실시간으로 운용하고 있다.

학술 연구도 이 흐름을 뒷받침한다. PLOS ONE에 발표된 Lan Yang의 최근 연구(2024)는 3,232건의 세무 기록을 분석해 AI 기반 세무 리스크 예측 모형을 비교했는데, Random Forest 모형이 제조업 92.0%, 서비스업 93.4%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세무 리스크 예측이 이미 기계학습으로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환경에서 세무사는 단순히 AI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당국의 AI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3. AI는 자신 있게 틀린다: 검증의 제도화

AI의 효용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형태의 위험도 부상한다. 그것은 '대체'가 아니라 '오류의 책임'이다. 2023년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한 변호사가 생성형 AI가 제시한 판례 6건을 소장에 인용했다가 5,000달러의 제재금을 받았다. 그 판례 6건 모두 실재하지 않는, AI가 그럴듯하게 지어낸 환각(hallucination)이었기 때문이다(Mata v. Avianca, 2023). AI는 '모르겠다'고 하는 대신 자신 있게 틀린다. 세무 맥락에서라면 존재하지 않는 예규에 근거한 절세 설계나 미세하게 어긋난 세액 계산이 즉시 가산세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학술 연구도 있다. Guglyuvatyy(2025)는 AI 기반 세무행정에서 납세자 권리와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을 분석하며, 독립적 AI 감독 메커니즘의 도입과 함께 사람이 AI 결과를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EU는 더 나아가, 2026년 8월부터 고위험 AI 시스템에 '인간 감독(human oversight)', 그러니까 사람이 AI 결과를 이해하고 개입·중단할 수 있는 기능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이 원칙은 세무사 직역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프레임を提供한다.

따라서 AI 도입이 확대될수록 '검증'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된다. AI의 처리량이 사람의 검증 속도를 초과하는 순간, 검증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설계해야 하는 것이 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세액 변동이 수반되는 신고에 사람의 서면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세무사회 차원의 AI 도구 사용 기록 보관 기준을 마련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기술 도입의 부수적 문제가 아니라, 도입과 동시에 설계되어야 할 구조적 과제다.

4. 모델이 사라지는 날: 공급자 거버넌스와 사업연속성

두 번째 구조적 과제는 연속성(continuity)이다. 2026년 6월 9일, AI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은 자사 최신 모델 '페이블 5(Fable 5)'와 '미토스 5(Mythos 5)'를 출시했다. 그러나 사흘 뒤인 6월 12일,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 명령을 받아 전 세계 모든 사용자의 접근을 동시에 차단했다. 기술 결합도, 경쟁 탈락도 아니었다. 지정학적 규제 명령 하나가 최신 모델을 하룻밤 사이에 서비스에서 지웠다.

HMRC Connect처럼 다층적·분산적으로 구축된 과세당국 AI와 달리, 세무사 사무소 수준에서 특정 해외 모델 하나에 자동 분개·세액 예측·신고 초안 생성을 집중했다면 취약성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종합소득세 마감일 직전에 시스템이 멈추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위험 시나리오다. 더불어 우리 세무 인프라가 해외 최첨단 모델에 깊이 의존할수록, 이는 기술 선택의 문제를 넘어 데이터 주권의 문제가 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논의가 데이터의 무결성·보안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제는 '모델·공급자 거버넌스', 어느 모델에 얼마나 의존할 것인지, 핵심 모델이 멈췄을 때의 이중화와 대체 경로, 그리고 해외 모델 의존의 상한선까지 포함하는 사업연속성 계획(BCP)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세무사회 차원에서 특정 단일 외부 모델 의존 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국내 백업 인프라 접근권을 표준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5. 결론

글로벌 빅4 회계법인들은 AI에 각각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면서도, 그 상당 부분을 인력 감축이 아니라 수만 명을 'AI와 함께 일하는 전문가'로 재교육하는 데 쓰고 있다. 앞서 살펴본 루틴은 대체되고, 판단과 전략에 대한 수요는 커진다는 역사적 패턴은 현재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패턴이 세무 직역에 유리하게 작동하려면 두 가지가 선제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하나는 AI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검증 체계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모델이나 공급자에 대한 의존이 임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연속성 설계다. 이 두 가지는 기술 도입 이후의 숙제가 아니라, 도입 설계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